



재정경제부

보도참고자료

보도일시
2007.10.25(목) 14:00

- 풍요로운 나라
함께하는 선진경제
- 고품질 정책으로
신뢰받는 재경부

생 산 일	2007년 10월 24일(수)	생산부서	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
담당과장	중소서민금융과장 우상현 (T:2150-9650)	담당자	박민우 서기관 (T:2150-9651)

제목: 휴면에금이체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

- 「휴면에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」이 07.10.25(목)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에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
- 동 시행령은 지난 8.3일 공포된 「휴면에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
 - (금융기관 범위) 휴면에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
 - * 은행, 보험회사, 상호저축은행, 농협, 수협, 신협, 우체국 등은 법률에서 기 규정
 - (이체대상 휴면계좌) 30만원이하의 휴면에금을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음
 - (정보제공 방법) 휴면에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
- 동 시행령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금년말부터 금융기관간 자율적인 휴면에금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
 - 현재 휴면에금관리재단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간 구체적인 이체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임 (11월중 금융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목표)
 - * 다만, 이체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 이므로 현 단계에서 이체규모 등을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움

- 참고로,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(www.sleepmoney.or.kr), 은행연합회(www.kfb.or.kr), 생명보험협회(www.klia.or.kr), 손해보험협회(www.knia.or.kr)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
- 휴면예금 이체법은 원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동의 없이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
- 휴면예금 이체법과 관련없이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휴면예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

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